

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6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4월 22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우종호

1. 수정이유

- 삭제한 시유 기계류의 사용구역에 대하여 파주시 지역 및 파주시 민외 주민의 사용을 제한하고 파주시 지역 및 파주시 주민이 사용하여 파주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계류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
- 삭제한 기계반환에 대하여 다수 주민의 기계 사용을 도모하고 기계 반환의 원활화를 위해 현행대로 기계반환 기일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삭제한 “사용구역”에 대하여 “사용범위”로 수정하고 그 범위를 “시 관내 지역으로 하되, 관내 거주 관외 경작자도 포함한다”로 함.(안 제4조)
- 삭제한 기계반환 기일인 “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”를 현행대로 존치함.(안 제10조제1항)

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용범위) 이 조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범위는 시 관내 지역으로 하되, 관내 거주 관외 경작자도 포함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기계반환) ①기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사용구역) 이 조 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구역은 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.	(삭 제)	제4조(사용범위) 이 조 례에 의한 기계류의 사용범위는 시 관내 지역으로 하되, 관내 거주 관외 경작자도 포함한다.
제10조(기계반환) ①기 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는 그 만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	제10조(기계반환) ①기 계류를 사용한 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 을 때에는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	제10조(기계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